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9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이병진·조 국·임호선

윤준병 • 한정애 • 송옥주

임미애 · 이연희 · 한민수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영토의식과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또한 전국에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강화 조치가 필요함.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 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 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 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 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법률 제 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립·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4조(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 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 |
| | 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식을 제고하고 독도의 지속 |
| |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독도 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 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
| |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③ 제1항에 따른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
| |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